

환경영향평가개론

05.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성과,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평가제도 기본방향의 재설정, 평가절차의 개선방안, 주제별 역할의 개선방안, 그리고 그 밖의 개선사항으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I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의 재설정

1. 평가제도의 역할 재설정

앞에서 제기된 현행 환경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전체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작성한 계획안을 협의기관이 심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검증형 또는 협의형 평가제도에서 벗어나,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보생산과 정보교류 기능이 강조되는 계획지원형의 평가제도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제도를 평가협의 제도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의 계획안을 검토/심사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평가의 개념이 정보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평가제도를 협의제도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평가제도의 역할 재설정>

- (기존인식)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심사/협의
- ⇒ (발전방향)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정보 생산 및 교류 시스템

이에 비해 본래의 평가제도는 사업구상 및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만드는 절차로 규정되고 있다.¹⁾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이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심사/협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생산 및 교류 시스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전략환경평가의 재설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략환경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당시 도입의 취지로는 개발사업이 아닌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와의 가장 큰 차이였다. 그러나 행정계획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행정계획의 상당부분이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결국은 지구지정단계 등 개발사업의 기본계획단계가 사전환경성검토의 주요 대상으로 조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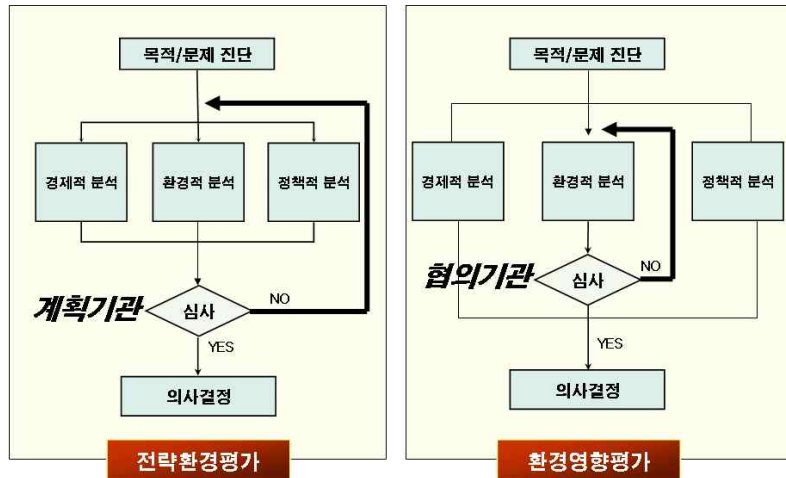
그렇다면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인 분석을 통하여 계획안을 수립해가며 협의기관과 협의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사는 협의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계획안이 환경적 고려가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심사이며, 보완요구자는 협의기관이 된다.

이에 반하여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정책적 수요, 경제적 수요에 의한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이다. 즉, 환경적인 측면만이 아닌 경제성, 정치성을 고려한 종합판단이며, 이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자는 승인기관 또는 계획수립기관이 된다.<그림 5-1 참조>

1) 미국 NEPA, 일본 환경영향평가법 등. 외국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일본환경성,2004, 제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참조하기 바람





<그림 5-1>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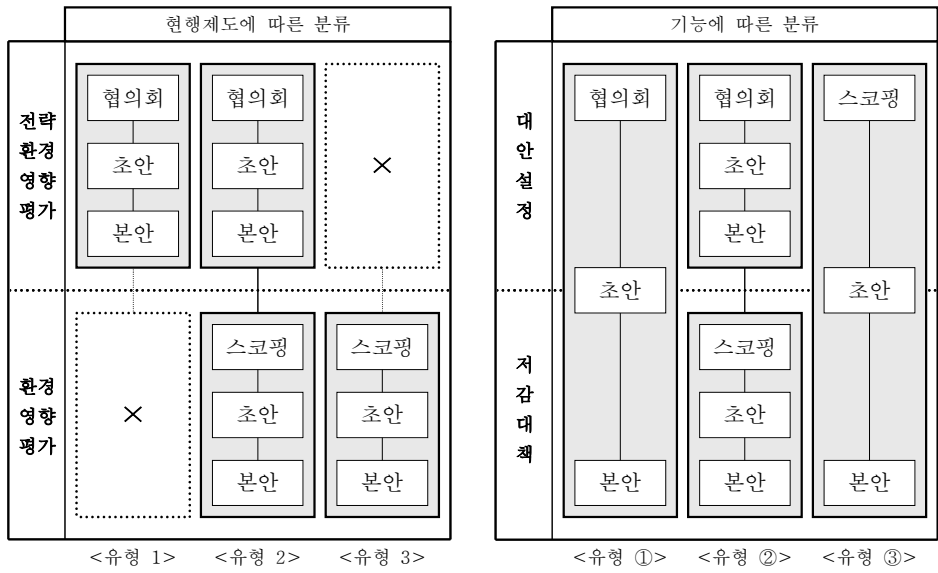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즉 골프장의 지구지정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단계는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전략환경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환경평가 절차의 개선방안

1. 단일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제도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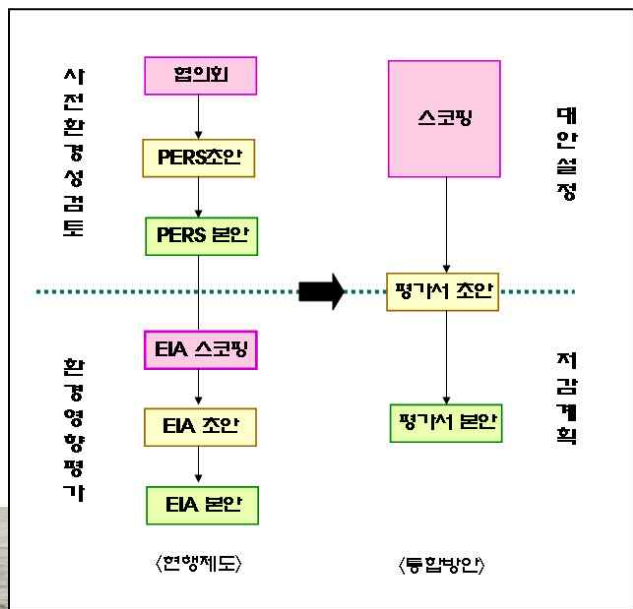
환경평가의 절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절차의 중복이라는 비판이다. <그림 5-4>를 보면 현행제도에 의한 개발사업의 환경평가는 3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1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이다. 보전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유형2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및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저감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이다. 유형3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산업단지 지원 특례법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에 따른 분류를 기능에 따라 재분류 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유형1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지만 저감계획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유형3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입지 및 계획적절성 등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도 입지 및 계획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개발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5-4> 개발사업 환경평가제도의 유형

제도상의 특성은 불명확해지지만, 기능상의 특성은 매우 명확해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하는 유형1이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유형2이든,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유형3이든 제도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에서는 입지 및 계획적절성을 검토하는 대안검토단계와 저감대책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며 실질적으로 대안의 검토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말하는 스코핑의 기능에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를 스코핑과 평가서초안단계로, 평가서 본안단계는 그대로 평가서 본안 단계로 유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생략한다면 <그림 5-5>와 같이 일원화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주민의견수렴은 스코핑,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의 3단계에서 실시하므로 오히려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5>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제도 일원화 방안



<표 5-2> 개발사업 환경평가의 일원화 방안

구분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평가 제도의 일원화 방안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저감대책강구(토지이용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함)	토지이용대안을 포함한 대안 검토기능 포함한 계획지원 정보생산
개발사업의 평가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6단계	환경평가 3단계(스코핑, 초안, 본안)
스코핑의 범위	평가항목 등의 중점화	대안의 설정과정 및 평가항목 등의 중점화
스코핑의 방법	심의위원회	공중참여(주민참여와 전문가 참여를 포함함)를 통한 대안에 대한 합의형성 추구
주민참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2차례)	스코핑, 초안, 본안(3차례)
환경부의 관여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협의 환경영향평가단계-협의	스코핑단계-자문 환경영향평가단계-협의
대안검토의 시점	기준중심(규제성격의 소극적 의견)	목표중심(자문성격의 적극적 의견)

2. 스코핑의 활성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항목별 평가라는 인식을 가지던 시절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조사, 평가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비해서 외국의 스코핑 단계는 우리나라의 스코핑 단계와는 다르다. 외국의 스코핑은 개발사업의 대안을 설정과 주요 환경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 등 제3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계로 인식되어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항목의 설정 이 외에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스코핑의 주체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며, 시기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사전입지 상담제도 또는 환경성검토협의회 단계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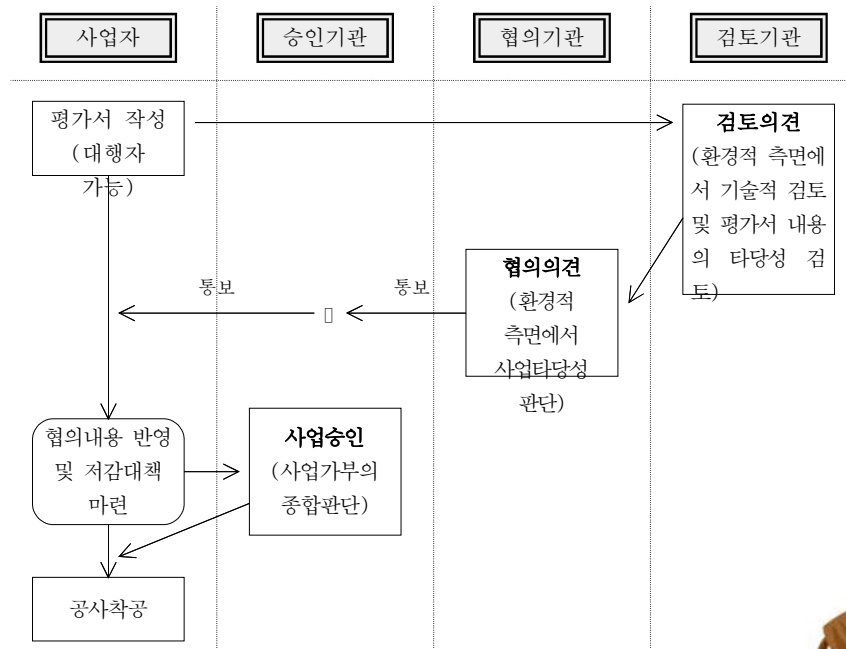
스코핑은 확일적으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수집단계이다. 현행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상관없이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최근에는 서면심의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심지어 협의회가 스코핑이라고 오해하고 평가항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까지나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결정권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코핑은 비공식적인 자문회의를 비롯하여,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주민토론회, TV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자가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효율적으로 정보수집을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문헌조사 및 평가대행자가 유사사례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살려서 평가를 진행하여도 된다. 이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은 스코핑 자문회의만 10회 이상 개최할 수도 있다.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면 그만큼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의 대안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사항을 사업계획의 빠른 단계에서 미리 알아내어 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나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환경평가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갈등이나 환경문제보다도 협의기관의 협의를 받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스코핑을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스코핑은 정보수집기능, 대안설정기능 등 환경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협의제도가 아닌 계획지원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스코핑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스코핑에 대한 명확한 인식,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

III 주체별 역할의 개선방안

현행 제도에서는 검토기관과 협의기관, 승인기관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상적으로는 검토기관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가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나 평가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주로 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기관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가부 자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승인기관은 환경적인 영향이 크더라도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업 승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환경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책적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공개하고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림 5-6> 평가에 관련된 각 주체의 역할분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검토기관이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협의기관이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승인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부담을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 채반금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협의기관이 환경적인 측면만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가지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각 주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승인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각 주체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자.

1. 승인기관의 책임 강화

환경평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교류이다. 여기서 의사결정이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자의 계획안 수립이며, 다른 하나는 승인기관의 인허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의기관, 검토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계획 및 인허가 행위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승인기관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은 앞서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는 다음 3가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승인기관은 ROD와 같은 인허가시 환경적 고려에 대한 판단근거를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친환경설계지침이나 사업유형별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수립을 주도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승인기관의 환경관련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승인기관 내부에 환경전문가를 배치하고 환경평가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환경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을 협의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승인기관 내부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협의기관의 역할 효율화

협의기관의 역할이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국책사업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에 승인기관은 국토해양부 등 담당부처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사업이며, 환경부 또한 중앙정부의 일원으로서 개발부처의 사업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워진다. 환경부의 협의의견이 더욱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특성에 따른 협의기관의 역할 재설정안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영향이 정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대체하며, 이에 대한 협의는 관련 법규에 의한 담당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완료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 내의 환경부서에서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 환경평가조례의 수립과 연계되어 고민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일반적인 환경평가사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협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국책사업과 같은 환경적인 이슈만이 아닌 사회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심사를 하며 심사의견을 공개한다. 환경부는 심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 논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환경부의 의견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정치적인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안이며, 이러한 논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부 의견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협의와 별도로 환경평가과정에서 환경담당부처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협의기관의 의견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부처와의 역학관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사회에 공개되지 않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기관의 권한은 민간사업에는 강화되고 국책사업에는 약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철저한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표 5-3> 사업의 특성에 따른 협의기관의 역할 차별화 방안

구분	평가절차	협의단계	비고
국책사업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기구로 심의회를 설치하여 평가서를 검토/심의하도록 함 •협의기관은 협의는 하지 않고 심의회 멤버로 참여 	정보공개와 감시 프로세스 강화해야 함
일반사업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기관의 협의 	
정형화되고 영향 작은 사업	저감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법에 의한 담당부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의 협의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제시로 절차 간소화

3. 검토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검토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전문검토기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심의회형식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개선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토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방환경청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같이 협의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둘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같이 승인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셋째, 의회 산하기관 또는 제3자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시대적인 상황 또는 정치사회적인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검토기관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기구론 또는 조직론의 차이를 떠나서 검토기관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할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의 확보이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자연과학으로서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전문성,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포함한다. 검토기관이 모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인재 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철저한 정보공개이다. 검토기관의 의견은 사업자 및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일 뿐, 그 자체가 법적 또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토기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견해를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평가와 관련된 각 주체가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KEI의 검토회의 및 검토의견의 공개, 협의회 및 심의회의 의사록 작성 및 공개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 검토의견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립성 및 독립성의 확보이다. 이는 검토기관의 의견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검토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검토의견의 신뢰도는 떨어지며 검토기관의 존재의미 또한 사라지게 된다. 중립성 및 독립성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IV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합의형성

1. 정보공개 개선

환경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환경평가의 필수조건이며, 미국, 일본 등 환경평가제도를 오랫동안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에서는 평가서 초안만이 주민의견 수렴용이라는 인식이 많다. 따라서 스코핑단계나 평가서 본안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없으며, 평가서 본안이나 검토의견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사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환경에 대한 가치판단은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이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치의 우선순위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화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하고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경평가의 근본적인 원칙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에 있어서도 모든 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코핑단계,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및 검토기관, 협의기관, 승인기관의 의견, 심의회에서의 논의사항이 모두 공개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주민참여 개선

정보공개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도 기회와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즉, 의견수렴의 대상범위를 철폐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외국에서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의 참여를 의미하는 공중참여의 의미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민만이 아니라 전문가, 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의견수렴의 대상이나 대상지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상지역에 있는 주민의 환경에 무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이라면 주민의견수렴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공중참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공중참여방식에는 설명회, 공청회 외에도 워크숍, 전문가 기술토론회, 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3.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우리나라 환경의 대상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도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매우 미비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검토기관, 협의기관에 사회환경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듯 사회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환경평가가 환경부의 고유 업무범위를 대상으로 한 협의제도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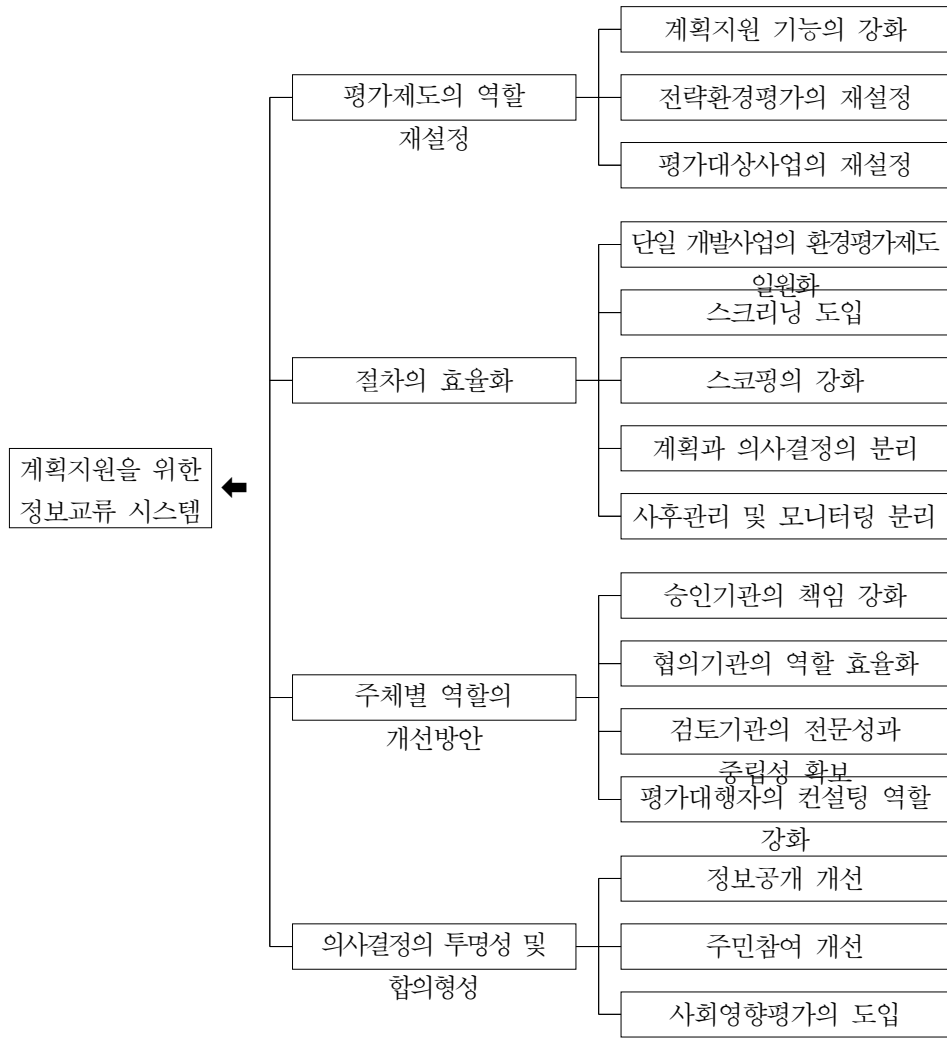
예를 들어 택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들의 비자발적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저소득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점점 먼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환경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사람이 환경평가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못되고 있는 것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전 문제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미비하다. 이 부분이 앞으로 환경평가에서 조망해주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이 분야의 당면한 문제는 사회영향평가의 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보다도, 무엇이 사회영향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왜 사회영향을 환경평가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도입

2) 일본 환경성 자료, 세계의 환경영향평가 참조하기 바람



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고 있으며 많은 비자발적 주민이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영향평가의 실시는 시급한 과제이며, 단순한 평가항목의 개발이 아닌 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5-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